



大邱建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황재찬 상근부회장 취임

우리사회 제3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임된 황재찬 상근부회장이 본회 이사회 인준절차를 거쳐 지난 10월4일 부임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우리사회 3층 회의실에서 전임 채서락 사무처장 퇴임식과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식이 동시에 간소하게 치루어졌다.



이에 따라 신임 황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사회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대구광역시 건설관련부서에서 과장 및 국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건설업계와 건설협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 해외시찰 회원친목행사 실시



우리사회는 2010 회원친목행사를 지난 10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6박8일간 미국 서부지역으로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및 동반자등 3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LA, 그랜드캐년, 라스베가스, 요세미티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등 미서부 주요지역을 돌며 견문을 확대하고 상호간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주)시그마종합건설 이창우 대표이사가 고급 기념품을 협찬하여 주었다.

지자체 공사 실적평가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경영상태 평가방법 확대, 일괄입찰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2010.10.26)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공경험 평가
 - 10억이상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 완화(규모별 30~50%p 완화)

공사 규모	현행	개정안
300억미만-100억이상	3년 210%	3년180%(△30%p)
100억미만 - 50억이상	3년 200%	3년170%(△30%p)
50억미만 - 30억이상	3년 200%	3년 170%(△30%p)
30억미만 - 20억이상		
20억미만 - 10억이상	3년 180%	3년 50%(△30~50%p)
10억미만 - 3억이상	4년이상 70%, 4년미만 60%	좌동
3억미만 - 2억이상	4년이상 60%, 4년미만 50%	좌동
2억미만	4년이상 60%, 4년미만 50%	좌동

- 10억미만 공사에도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실적제한 입찰 가능
 - ※ 시행규칙에 따라 실적제한이 가능하며, 실적제한 평가 심사기준 명확화
- 업종평가금액 산정기준을 추정가격으로 명확화
- 2억미만 공사 접근성 평가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는 광역기준임을 명확화
- 경영상태 평가
 - 재무제표평가, 신용등급평가, 종합평가방법(신용등급 70% + 재무비율 30%)중 입찰자가 선택
 - ※ 100억원이상 공사는 '2011.7.1.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종합평가방법만 적용
 - 신용등급 평가 만점기준 : BB⁰이상인 경우 만점
 - ※ 당초 행안부(안) : BBB⁺ 이상 만점
- 기술능력평가
 - 기술개발투자비율외에 심사대상항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만 평가, 명시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 ※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를 대상으로 평가
 - ※ 당초 행안부(안) : 기술자 보유상황을 반드시 평가한다는 입장
 - 기술자 보유상황 심사항목의 시공지원기술자 평가 삭제, 일반기술자로 배점 조정
- 기타사항
 -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생략 가능
 - 허위서류제출 또는 미제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시행령 반영)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내역입찰의 집행
 - 100억이상 공사라 하더라도 최적가치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는 공사는 내역입찰대상에서 제외

-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을 설계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 ※ 국가기준에 일치시킴
- 공동도급 운용요령
 - ‘공동+분담’ 혼합방식에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부분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도록 명확화
 - ※ 예시 : A, B, C의 3개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시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가능
 - 공동이행 : A+B+C, 분담이행 : C ⇒ 불가능
 - 공동이행방식
 - 선금지급방법 변경 : 대표자 → 구성원 각각 지급
 - 공동수급체 탈퇴자가 있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 자율적으로 출자비율 조정 가능(공동수급협정서)
-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 선금지급대상 : 공사계약기간(60일 이상) 제한규정 삭제, 잔여이행기간 30일 이상 요건 현행유지
 - 사고이월의 경우 선금잔액에 대해 반환후에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월된 연도에 다시 지급 가능
 - 선금지급 예외사유 명확화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도입 ※ 국가기준 반영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 실적공사비 단가 변동기준 명확화
 - 국토부 발표(2월, 8월) 실적공사비 등락율 7%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등락율 7%
- 공사입찰유의서
 - 현장설명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까지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 ※ 국가기준에 일치시킴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전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공동도급 금지

■ 수의계약 운영요령

- 수의계약 결격사유 완화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 6월
- 시공여유율 평가기준 변경
 - 법인 기준 → 업종별로 각각 산정
- 수의계약 배제사유 추가
 -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설계변경 사유 제한(순수내역입찰제, 물량내역수정제)
 -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는 경우 그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이 있어 계약변경하더라도 계약 금액 조정 불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 신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
 -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기타 산하기관도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 적용

회원 친선 등반행사 실시



우리시회는 회원간 정보교류, 친선도모 및 사기 앙양 등을 위하여 상반기에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하반기 회원 친선등반행사를 지난 10월 1일~2일간 울진 덕구온천 및 금강송 숲길 일원으로 다녀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하여 청진건설(주) 박명진 대표이사가 기념품과 행사당일 오찬 등을 협찬하여 주었다.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등급공사 시공경험 평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총괄과 - 8061, 2010.10.26.)을 개정하였다.

한편 우리협회는 최근 다수 개정된 조달청 각종 예규 및 국가 계약제도등에 대한 설명회를 1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

■ 등급공사 공동수급체 시공경험 평가방식 개선

- (현행) 공동수급체 대표자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실적 100% 인정
 - ※ 대표자 시공실적+(대표자의 구성원별 시공실적×시공비율)
- ⇒ (신설) 대표자의 시공비율 50%이상이고 등급업체인구성원 1개사 시공비율 30%이상인 경우 각각 실적 100% 인정
 - ※ 대표자 시공실적 + 시공비율 30% 이상인 구성원 실적 + (그 외 구성원별 시공실적 × 시공비율)
 - ex) 4등급 공사 입찰시

공 동 수 급 체	시공실적	시공비율	실적인정
A사(대표사), 4등급	100억원	50%	100억원
B사(구성원), 4등급	70억원	30%	70억원
C사(구성원), 3등급	150억원	20%	30억원

■ 지역가산점 확대

- 적격심사, 턴키/대안, 기술제안 대상공사 지역업체 가산비율 확대
 - (현행)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이면 12% 가산
 - ⇒ (개정) 최대 16%까지 확대 가산
 - ※ 예시 : 토목 200억원, 건축 80억원, 전기 20억원인 복합공사의 경우
 - (중전) 주공종인 토목공사에 40%(80억원) 참여하면 12% 가산
 - (개선) 전체 공사(300억원)의 40%(120억원) 참여해야 12% 가산(50% 이상 참여하면 16% 가산)

■ PQ 신인도 배점 상승(±3점 → ±5점)으로 인한 신인도 항목 산식 조정

- 추정가격 300억미만 100억 이상인 대상공사
(현행)신인도 평점 × 40/100 ⇒ (개정) 신인도 평점 × 24/100
-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 이상인 대상공사
(현행)신인도 평점 × 30/100 ⇒ (개정) 신인도 평점 × 18/100

녹색건설(건축물) 인증제도 현황

조달청이 최근 개정(10.19)한 “조달청 PQ심사기준” 에서 새로이 신설된 「녹색건설 인증업체 우대제도(배점 2점)」와 관련한 인증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평가대상	○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6개 용도 건축물	○ 신축 건물이 대상 - 18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업무용 건축물
평가항목	○ 4개분야(36~45 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자원 및 환경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에너지 소요량 -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 절감율을 평가
인증기관	○ LH 토지주택연구원 (http://huri.lh.or.kr/ecohouse/ ☎ 031-738-4532)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크레비즈큐엠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에너지기술연구원 (http://www.kemco.or.kr/ 전자민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신청 ☎ 031-260-4416)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 철저 및 전산대체신고 활용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사업주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를 소홀히 하여 행정처분등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안내

- 신고주체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신고내용 : 근로자별로 근로내역(근로일수, 임금 등)을 기록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 전산대체신고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활용

■ 고용노동부 단속 내용 : 허위신고, 지연신고 및 누락신고등

- 허위신고, 지연신고 및 신고누락등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 특히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 및 책임의 범위

1. 사례의 소개

건물 건축공사사업자인 甲은 건축주 乙과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자, 건축주의 승낙을 받아 종합건설업자인 丙종합건설을 수급인으로 하는 대금 1억 5,000만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 공사 도중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丙 종합건설의 채권자인 丁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초한 丙종합건설의 건축주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과연 건축주는 乙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지.

2.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

가. 사례와 같이 건축주 乙과 丙종합건설이 서로 양해하여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건축주 乙과 丙종합건설간에는 위 공사계약은 무효이므로, 건축주 乙은 공사와 관련하여 丙종합건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丙종합건설 역시 건축주 乙에게 공사대금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그러나 허위의 공사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에 대하여 까지 그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종합건설의 채권자 丁은 사례의 공사도급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몰랐으므로 그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건축주 乙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책임의 범위

가. 사례는 실제 공사대금은 2억5,000만원인데, 이를 1억5,000만원으로 실제보다 줄여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인데, 건축주 乙은 丙종합건설의 채권자인 丁에게 2억5,000만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상의 금액 1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제3자인 丁은 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신뢰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보호되는 신뢰의 범위도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상에 기재된 1억5,000만원의 범위라 할 것입니다.

4. 사례의 경우

따라서 丙종합건설의 채권자 丁은 사례의 공사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인지 몰랐으므로 건축주 乙에 대하여 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고,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1억5,000만원의 범위에서만 추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10. 10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 조사가격	금월 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 철근	D10mm	720,000	720,000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사와 제강사간 가격 분쟁으로 제강사들의 출하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철근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되고 있음	○ 단위: M/T ○ 현장도착도
		D13mm	710,000	710,000		
		D16mm	705,000	705,000		
	고장력 철근	D10mm	725,000	725,000		
		D13mm	715,000	715,000		
		D16mm	710,000	710,000		
후판	SM490B	1,010,000	1,010,000	철광석 및 유연탄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내년 1분기 후판 가격은 약보합세가 예상되며 수급 상황은 호전됨	○ 단위: 개 ○ 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900,000	900,000	가격보합세이며 수요감소로 수급 원활함	○ 단위: M/T ○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990,000	990,000			
	400X400X13X21mm	960,000	985,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400	3,400	시멘트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수요부진으로 상용여부는 미지수이며 수급원활함	○ 단위: 포 ○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미콘	25-240-15	49,700	48,300	수요부진으로 가격이 약 3% 정도 인하되었으며 수급은 원활함	○ 단위: m³ ○ 현장도착도	
	40-240-15	48,700	47,300			
벽돌	㉔190X90X57mm	45	45	수요 부진하며 수급 원활함	○ 단위: 개 ○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18,000			
자갈	자연 자갈	# 57 25mm	13,000	13,000	수요부진하며 수급 원활함	○ 단위: m³ ○ 시내도착도
		잡석	12,000	12,000		
	쇄석	40mm	9,000	9,000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1,300	1,300	국제환경단체들의 벌목제한 압력과 중국, 인도등의 수요증가로 목재제품 인상이 예상됨. 수급원활함	○ 단위: 才 ○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450	1,450		

회원 현황

■ 회원수 : 168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88	60	18	1	1	168	+7

※ 신규4, 전입5 전출1, 등록말소1

■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기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월 (2010.10.01~10.31)	2	4	6		12
누계 (2010.01.01~10.31)	43	47	88		178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원사명	변경전	변경후	전화번호
상호소재지	(주)성비건설	(주)민형종합건설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68-23	(주)성비건설 대구 수성구 상동 170-1 2층	783-4830
소재지	호동건설(주)	대구 남구 봉터동 750-9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5-64. 2층	652-0491
"	(주)대일	대구 동구 신천동 356-5	대구 수성구 범어동 197-2, 4층	751-3368
"	(주)서림종합건설	대구 달서구 호림동 10-6	대구 달서구 호산동 357-115	591-1123
"	원영건설(주)	대구 수성구 범물동 465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11 신흥B/D 5층	782-5800
"	(주)해성종합건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401-2	대구 수성구 만촌동 617-32	428-4556

전입 회원

상호	업종및등번	대표자	전입신고일자	전화번호
청암종합건설(주)	토건160087	김운아	2010. 08. 02	562-4421
(주)서현종합건설	토목030020	강래웅	2010. 09. 01	765-9675
덕원종합건설(주)	건축010542	이진현	2010. 09. 16	616-9800
(주)효진종합건설	토건170192	김한기	2010. 10. 05	266-0252
(주)여명	토목170273	윤정배	2010. 10. 08	784-1030



협력업체 지원교육(대구실시) 신청 안내

금년초 개정되어 내년 평가시 부터 적용되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중 교육지원분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협력업체 임직원을 노동부 등이 승인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교육비 등을 지원한 경우만 해당함에 따라 회원사의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구지역 교육에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0. 11. 30(화) 09:00 <8시간 전일교육>
- 교육장소 : 추후통보
- 교육대상 : 협력업체 임직원
- 교육비 : 1인당 8만원 정도(고용보험료 비환급형)
- 신청기한 : 2010. 11. 19(금)까지 본회 인적자원개발팀 (02-3485-8254)

영남권 하도급 특별교육 신청안내

- 교육일시 : 2010. 11. 17(수) 13:30
- 장 소 : 부산건설회관 강당(051-906-9000)
- 교육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
- 교육특전 : 교육이수시 하도급법상 벌점 감경 (대표자 1점, 임원 0.5점)

입회를 축하합니다

상호	업종 및 등번	대표자	전화번호
범승종합건설(주)	건축030443	김정숙	525-8970
(주)엘디에스산업개발	건축030463	이완우	427-0411
반도건설(주)	건축030464	김지희	761-3252
(주)중덕건설	토건030111	전중수	427-0503

회장 동정



☞ 대구도시공사 주최 「더 큰 대구비전」 토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0. 10. 8(금) 13:00 인터불고호텔
- 하신일 :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건설업계 중요성 설명

☞ 본회 제10차 이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10. 10. 13(수) 16:00 서울 르네상스호텔
- 하신일 : 건설업계 현안사항 협의결정

☞ 영남권 시도회장 친선행사 주관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1(목) 11:30 그레이스 C.C
- 하신일 : 친선경기 및 영남권 시도회장간 친목 도모